

총동창회 운영세칙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총동창회 운영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항공대학교동창회(이하 '본 회'라 한다) 회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회칙에 정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
2. 항공과학기술, 전공분야별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3. 모교발전에 관한 사항
4. 기금 조성
5. 장학에 관한 사항
6. 회보 간행
7. 학보 및 각종 기술정보 배포
8. 기타 필요한 사업

제3조 (구성) 회칙 4조에 의한 본 회의 구성표는 다음과 같다. <별표 1>

제4조 (운영위원회, 집행부) 본 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 및 집행부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선임부회장, 각부 책임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결의된 사항을 집행하는데 대하여 협의한다.

② 집행부

1. 집행부에는 총무부, 재정 및 사업부, 조직 및 섭외부를 둔다.
2. 각부에는 3인 이상 10인으로 구성하되 부회장 및 이사로 한다.
3. 집행부의 책임위원은 선임부회장으로 하고, 각부서별 책임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4. 각부서별 위원은 책임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5. 집행부는 회칙 제13조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 (회비 및 찬조금)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회칙 제17조에 명시된 회비 및 찬조금은 다음과 같다.

① 입회비

1. 정 회원 : 10,000원(대학원 포함)
2. 기타회원 : 정회원 입회비 이상

② 연회비 : 10,000원

- ③ 종신회비 : 연회비의 10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종신회비조로 10,000원을 납입한 회원은 신규 종신회비에서 1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한다.

④ 찬조금

1. 특별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
2. 각출방법 및 금액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출연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⑤ 납입방법

1. 입 회 비 : 재학생은 일괄적으로 졸업학년도에 납입한다.
2. 연 회 비 : 당해년도에 직접 또는 학과, 졸업회수, 지역, 직장별로 납부한다.
3. 종신회비 : 당해년도에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4. 찬 조 금 : 필요시 통보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 납부한다.

제6조 (회계보고) 회계보고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보고 : 정기총회, 상임이사회(연 3회 이상)
2. 수시보고 : 동창회보

제7조 (감사) 본 회의 감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감사 : 연 2회로 하되 6월, 12월에 한다.
2. 수시감사 : 회원 50인 이상 또는 상임이사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실시한다.
3. 감사보고 : 각종회의 및 동창회를 통하여 보고한다.

제8조 (기타)

1. 학과, 졸업회수, 지역, 직장별 동문회의 조직개편 및 임원개선이 있을 때는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는 학과, 졸업회수, 지역, 직장별로 선임한다.
3. 학과, 졸업회수, 직원, 직장별로 동문회의 구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운영 위원회에서 조직을 유도한다.
4. 본 세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1. 본 운영세칙은 198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동창회 구성

